

## 제 14 장 경쟁 정책

### 제 14.1 조 목적

양 당사국은 경쟁, 경제적 효율성 및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키는 정책의 이행,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안에 대한 협력, 그리고 양자간 무역과 투자를 제한 할 수 있는 반경쟁적 관행의 축소가 중요함을 인정한다.

### 제 14.2 조 경쟁의 촉진

1. 각 당사국은 경쟁법의 유지, 그리고 반경쟁적 관행에 대처하는데 적절하고 효과적이라고 간주하는 조치의 채택 및 집행을 포함하여 자국 영역 내에서 반경쟁적 관행을 해결하려 노력함으로써 경쟁을 촉진한다.
2. 각 당사국은 자국 경쟁법의 집행을 담당하는 하나 또는 복수의 당국을 유지한다. 각 경쟁 당국의 집행 정책은 다른 쪽 당사국의 인을 동종의 상황에서 당사국의 인보다 불리하지 아니하게 대우하는 것을 포함한다.

### 제 14.3 조 경쟁법의 적용

1. 당사국이 반경쟁적 관행을 금지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와 그 조치에 따라 취한 집행 조치는 투명성, 적시성, 비차별성, 포괄성 및 절차적 공정성의 원칙과 합치한다.
2. 각 당사국은 모든 사업이 자국의 영역 내에서 시행 중인 경쟁법의 적용대상이 되도록 보장한다.
3. 제2항에도 불구하고, 당사국은 특정 사업이나 분야를 경쟁법의 적용에서 면제할 수 있다. 다만, 그러한 면제는 투명하며 공공정책이나 공익에 근거하여 수행되어야 한다.

### 제 14.4 조 경쟁 중립성

양 당사국은 자국 영역 내에서 모든 수준의 정부가 공기업에 대하여 공기업이라는 이유로 영업 활동에 있어 경쟁상 혜택을 제공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정한다. 이 조는 공기업의 영업 활동에 적용되고, 비영업, 비상업적 활동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. 이 조의 적용은 그 기업들에게 맡겨진 특정 공공 업무의 수행을 방해하지 아니한다.

### 제 14.5 조 협력

1. 양 당사국은 경쟁의 촉진 및 반경쟁적 관행의 축소를 증진하기 위한 협력 및 조정의 중요성을 인정한다.
2. 양 당사국은 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와 호주 경쟁 및 소비자 위원회 간 경쟁 및 소비자 보호법 적용에 관한 협력약정을 포함한 기존의 협력 메커니즘을 활용하여, 정보교환, 통보, 기술협력 및 국경간 집행 사안에 관한 조정을 포함한 경쟁법 및 정책의 개발과 집행에 있어 적절히 협력하고 조정할 수 있다.

### 제 14.6 조 통보

1. 각 당사국은 어떠한 집행활동이 다른 쪽 당사국의 중요한 이익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, 그 집행활동을 자국의 경쟁당국을 통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경쟁당국에 통보한다.
2. 통보는 집행활동의 초기 단계에서 이루어진다. 다만, 그 통보는 양 당사국의 법에 반하지 아니하고 수행 중인 어떠한 조사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야 한다.

### 제 14.7 조 협의

1. 한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, 양 당사국은 양 당사국 간 무역이나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 반경쟁적 관행을 축소하기 위하여 협의한다.
2.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협의에 이어 조치를 취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당사국의 경쟁당국의 재량을 제한하지 아니한다.

### 제 14.8 조 국경 간 소비자 보호

양 당사국은 자국의 소비자 보호법의 집행을 포함한 소비자 보호 관련 사안에 대한 협력 및 조정을 증진한다.

### 제 14.9 조 분쟁해결

어떠한 당사국도 이 장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도 이 협정상의 분쟁해결 수단을 이용하지 아니한다.

## 제 14.10 조 정의

이 장의 목적상,

**반경쟁적 관행**이란 다음과 같이 경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영업행위 또는 거래를 말한다.

- 가. 기업 간 반경쟁적인 협정 또는 약정
- 나. 지배력의 남용, 그리고
- 다. 반경쟁적 인수 및 합병, 또는 그 밖의 기업 간 반경쟁적 구조적 결합

**경쟁법**이란 다음을 말한다.

- 가. 한국의 경우, 그 개정과 대체를 포함한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및 그 이행 규정, 그리고
- 나. 호주의 경우, 그 개정과 대체를 포함한 2010년 「경쟁 및 소비자 법」과 제4장 및 제11장 A 관련 규정, 그리고 제10장을 제외한 제4장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그 밖의 다른 장의 조항, 그리고

**소비자 보호법**이란 다음을 말한다.

- 가. 한국의 경우, 그 개정과 대체를 포함한 「소비자기본법」, 「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및 그들의 이행 규정, 그리고
- 나. 호주의 경우, 그 개정과 대체를 포함한 호주의 소비자법, 및 2010년 「경쟁 및 소비자 법」 중 호주의 소비자법 관련 규정